

●포항해양경찰서공고 제2026-16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포항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6호 「(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적합성 검토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근거 법령 변경(「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나. 고시수역 변경

－ 영일만항 내 해양경찰 전용부두 신설로 포항항 고시수역 “나” 항 변경

다. 재검토 기한 수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재설정

라. [별첨]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포항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10월 9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우편 : (우)376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

2) 전화 : 054-750-2449 / Fax : 054-750-2948

3) 전자우편(메일) : kwonmg72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경장 권미근, 054-750-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